

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1호서식] <개정 2025. 8. 7.>

[]휴업 []폐업 []재개업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 즉시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

신고인	성명(법인명)	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 (전화번호:)				
영업장	명칭(상호)				
	주소	(전화번호:)			
	영업의 종류	[]동물생산업 []동물수입업 []동물판매업 []동물장묘업 []동물전시업 []동물위탁관리업 []동물미용업 []동물운송업			
재개업(폐업)일	년 월 일				
휴업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	
사유					

「동물보호법」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[]휴업, []폐업, []재개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첨부서류	1.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(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,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만 작성합니다) 2. 동물처리계획서(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, 동물장묘업의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2.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.
3. 신고인의 업종에 따라 영업의 종류란에 해당되는 업종의 “[]”란에 √ 표시를 합니다.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고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처리절차

